



제43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비율 폐지〉

■ 윤건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494호)

2026. 2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정순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비율 폐지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윤건영의원 등 14인
2. 제안연월일 : 2025. 11. 24.
3. 회부연월일 : 2025. 11. 2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비율 폐지

현행법은 특별교부세를 지역현안 대응 목적으로 40%,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목적으로 50%, 국가지방간 협력사업 10% 등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별 배분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)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특별 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<u>따라</u> 교부한다.	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---- ----- <u>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경우에</u> -----.
1.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 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 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<u>100분의 40에</u> 해당하는 금액	1. ----- ----- ----- - <u>경우</u>
2.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 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 이 감소한 경우: 특별교부세 재 원의 <u>100분의 50에</u> 해당하는 <u>금액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경우</u>
3. 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, 지역 역점시책 또	3.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 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 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~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 -경우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특별교부세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부터 적용한다.	

현행의 특별교부세 배분은 지역현안,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, 국가지방협력 등 각 목적별로 40%, 50%, 10%의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는데, 이처럼 각 목적별 배분비율을 고정하는 것은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. 이에 개정안은 각 목적별 배분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
다만, 배분기준 없이 대규모 재난 및 긴급한 현안 등을 대비하여 연초에 특별교부세 배분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경우 연도말에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특별교부세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. 또한, 이와 반대로 배분비율 없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배분할 경우 정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자

금 투입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.

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 배분기준을 폐지할 경우 오히려 안전 분야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불확실해질 수 있고, 각 분야별 배분비율이 연도별로 달라짐에 따라 제도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33